

研究論文

태종(太宗) 이방원(李芳遠)의 권력정치 - ‘양권(揚權)의 정치술(政治術)을 중심으로 -

박홍규(공동저자)* · 방상근(공동저자)**

I. 머리말	V. 양권의 잔영(殘影): 폐세자(廢世子)와 심은 사건
II. 한비와 양권(揚權)	VI. 맺음말
III. 양권의 발현(發顯): 이거이 부자(父子) 사건	<참고문헌>
IV. 양권의 완성(完成): 민씨 형제 사건	<국문요약>

I. 머리말

조선의 제3대 임금인 태종 이방원(1367~1422, 재위 1400~1418, 상왕기 1418~1422)은 두 차례에 걸친 정변(政變)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재위에 올랐다. 정변의 본질은 개국이후 7년간 전개되어온 유교국가 조선의 통치체제 구축에 기여했던 개국공신 세력들을 무력(武力)을 통해 제거한 쿠데타였다. 따라서 부왕(父王)의 자리를 무단적인 힘을 통해 뒤엎어버린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출발한 태종은 자신의 왕위와 왕권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도덕적인 명분과 정통성의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민심(民心)을 수습하고 취약한 정권기반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유교적 개혁의 프로그램들을 이어받아 충실히 이행하면서 유교이념의 제도화를 이루어가고자 했다.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한국·동양정치사상 전공(hkpark61@korea.ac.kr).
 **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한국·동양정치사상 전공(phronesis@korea.ac.kr).

태종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체로 태종대의 유교적 왕권강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방식에 있어서는 의정부·6 조·승정원·인간을 중심으로 한 정치기구의 제도화 과정과 관련된 연구나,¹⁾ 개국(開國)·정사(定社)·좌명(佐命) 공신이나 외척(外戚)과 같은 여러 정치세력에 관한 연구에 그치고 있다.²⁾ 이러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개국초기의 혼란 속에서 여러 정치세력 간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조정하면서 유가적 통치원리의 확립과 왕권강화를 위한 정치의 제도화를 달성해 갔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연구에서 말하는 유가적(儒家的) 군주로서의 태종의 모습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통치행위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공신과 외척세력 제거와 같은 권력정치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는 또 다른 해석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태종은 분명 유교군주임에 틀림없지만, 정권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왕권을 강화하는데 있어서는 『한비자(韓非子)』에서 말하는 ‘양권(揚權)을 위한 술(術)을 사용했던 법가적(法家的) 군주의 일면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취약한 정치적 정당성에서 출발한 태종이 어떻게 왕권(王權)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술치(術治)를 구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 1) 태종기의 정치기구나 통치체제와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정두희 「조선건국초기 통치체제의 성립과정과 그 역사적 의미」, 『한국사연구』 67(1989); 이동희 「조선 태종대 승정원의 정치적 역할」, 『역사학보』 제32집(1991); 최선혜 「조선초기 태종대 예문관의 설치와 그 역사적 의미」, 『眞檀學報』 제80집(1995); 이재봉 「조선조 초기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교육연구』 1집(1996); 임용한 「조선초기의 수령제 개혁과 그 운영」, 『人文學研究』 제2호(1998); 최성현 「조선 태종의 왕권강화 정책에 관한 고찰」,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8); 한충희 「조선초기 의정부연구(상·하)」, 『한국사연구』 31(1980)·32(1980); 한충희 「조선초기 육조연구」, 『대구사학』 제20·21합집(1982); 한충희 「조선초기 승정원연구」, 『한국사연구』 59(1987); 한충희 「조선초(태조2년~태종1년) 義興三軍府研究」, 『계명사학』 제8집(1994); 한충희 「조선 태종왕권의 정치적 기반 연구」, 『대구사학』 제63집(2001).
 - 2) 태종기의 정치세력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김성준 「태종의 외척제거에 대하여 민씨형제의 옥」, 『역사학보』 제17·18합집(1962); 정두희 「朝鮮初期 三功臣 研究」, 『역사학보』 제75·76합집(1977); 이희관 「조선조 태종의 집권과 그 정권의 성격」, 『역사학보』 제20집(1988); 최승희 「太宗朝의 王權과 國政運營體制」, 『朝鮮初期 政治史研究』(지식산업사 2002); 한충희 「잠저기 태종연구」, 『대구사학』 제56집(1998); 한충희 「상왕기 태종연구」, 『대구사학』 제8집(1999); 유주희 「朝鮮 太宗代 政治勢力 研究」,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0).

II. 한비와 양권(揚權)

한비는 공손양(公孫鞅)과 신불해(申不害)와 같은 법가학파(法家學派)의 사상을 집대성하여 법(法)·세(勢)·술(術)로 완성하였다. 그는 술과 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술이란 것은 담당할 힘에 맞추어서 관직을 주고 명분에 따라서 실적을 추구하며 살생하는 권병을 손에 들고 여러 신하들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것은 군주가 장악하는 것이다. 법이란 것은 내건 명령이 관청에 명시되고 형벌은 반드시 민의 마음속에 새겨지며 상은 법을 삼가는 자에게 있고 벌은 명령을 어기는 자에게 가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신하가 모범으로 삼을 바이다. 군주에게 술이 없으면 윗자리에서 눈이 가려지고 신하에게 법이 없으면 아랫자리에서 어지러워진다. 이것은 하나도 없을 수 없이 모두 제왕이 갖출 조건들이다(「定法」).

군신(君臣) 간의 관계에서 군주가 신하에 의해 속임을 당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술(術)을 장악해야 하는데,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임금과 신하사이의 유대(紐帶)라고 하는 것은 유교에서 말하는 의리(義理)로 결합된 사이(義合)가 아니라, 각자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고 계산하는 사이(計合)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이를 한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군주와 신하는 서로가 계산하는 사이이다. 자신은 손해를 보면서 국가에 이익이 되는 일은 신하는 하지 않으며 국가에 손실을 끼치면서 신하에게 이득이 되는 일을 군주는 행하지 않는다. 신하의 속생각은 자신의 손해가 이로울 수 없으며 군주의 속생각은 국가의 손실이 즐거울 수 없다. **군신관계란 계산을 가지고 결합되는 것이다(君臣者也 以計合者也)**(「節邪」).

이처럼 군신관계란 계산을 가지고 결합되는 사이이고 군신 간에는 서로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신하는 사심을 감추고 군주의 태도를 살핀다. 따라서 군주가 윗자리에서 눈이 가려지지 않고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신하의 마음을 헤아려

체재할 수 있는 술(術)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술을 확립해서 신하들의 봉당(朋黨)을 쳐내야 한다. 이것이 군주가 자리를 보전하고 권력을 드높이는 ‘양권’(揚權)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한비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신하는 사심을 숨기고 군주의 태도를 살피며 군주는 법도[度量]를 잡고 신하를 제재한다. 그러므로 법도가 확립되는 것은 군주에게 소중한 보배이며 도당을 형성하는 것은 신하에게 보배가 된다. 신하가 그 군주를 시해(弑害)하지 못하는 것은 도당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주가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반드시 봉당을 쳐야만 한다. 그 봉당을 치지 못하면 장차 많은 무리를 모을 것이다(「揚權」).

그리고 군주가 양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봉당을 형성할 수 있는 세력 있는 신하[重臣]를 억제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병권, 재정권, 인사권, 상벌권 등이 한 사람의 신하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사적 당파[朋比]의 형성을 금해야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근본을 강하게 하고 지엽적인 것은 약화시킴”³⁾으로써 군주의 권력을 드높이는 길이라고 주장하면서, 한비는 ‘가지치기’[披翦]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군주가 된 자는 그 나무를 자주 베어 가지가 뻗어 나가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나뭇가지가 무성하게 뻗으면 장차 공가(公家)의 문을 막게 될 것이다 사가(私家)로 사람이 모여들면 조정 안은 텅 비어 군주는 장차 이목이 가려지고 갇히게 될 것이다. **그 나무를 자주 베어 가지가 밖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나뭇가지가 밖으로 자라나면 장차 군주의 자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揚權」).

이상과 같이 『한비자』에서는 군주와 신하 사이의 관계가 유교에서 말하는 의리로 결합된 사이[義合]가 아니다. 각자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고 계산하는 사이[計合]라는 것이고, 따라서 서로 대립하는 속에서 신하는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도당(徒黨)을 형성하며, 때가 되면 군주를 시해조차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비가 말하는 ‘가지치기’는 유가에서 말하는 ‘춘추대의론(春秋大義論), 즉 국가와

3) 劉澤華(저)/장현근(譯), 『中國政治思想史·先秦編(上)』(동과서, 2002), 614쪽.

왕실에 반역하는 난신적자(亂臣賊子)를 춘추(春秋)의 법에 따라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과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춘추의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신간의 의리(義理)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의합(義合)으로 이루어진 군신관계를 해치는 “군주에 대한 모반(謀反)이나 시살(弑殺)은 사념(思念)만으로 대역(大逆)이 되고 그것을 의도한 것만으로도 반드시 배어야 하는 것이다. 하물며 실제로 시역(弑逆)을 일으킨 난신적자는 멸절(滅絶)시켜야만 하는 것이어서, 이로 인해 ‘춘추는 그가 멸절되었는가 안 되었는가에 상관없이 이후 다시는 경문(經文)에 그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다.”⁴⁾ 따라서 여기에서는 난신적자의 금장지심(今將之心, 반역의 마음을 품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그것이 확인되고 나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배어야 하는 것이며, 그것도 지체 없이 배어버려야 한다. 심지어는 기미(機微)와 이상(履霜)⁵⁾의 조짐만으로도 벨 수 있으며, 먼저 베고 나중에 보고하는 것도 허락된다.

반면 ‘가지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권, 즉 왕권의 강화이다. 계합(計合)으로 이루어진 군신관계에서 군주와 신하는 상대를 살펴면서 서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주가 왕권을 유지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권신의 세력이 왕권을 위협하는지를 살펴야 하고, 이때 그가 실제로 모역(謀逆)을 꾀했는지 여부보다는 그의 세력이 왕권을 가리고 위협하고 있는가하는 ‘정치적 고려’가 더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객관적인 사실 못지않게 **군주의 주관적인 인식과 판단이 크게 작용하며**, 권신을 제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세력을 이루고 있는 당여를 색출하는 작업이 병행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시간을 두어 제거의 명분을 축적하고 적절히 술(術)을 구사함으로써 권신들을 제어하고 처벌하는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을 밝게 된다.

4) 日原利國, 『春秋公羊傳の研究』(東京: 創文社, 1976), 75~76쪽. ‘춘추의 법’에서는 군주 역시 신하에 대해서 죄 없이 부당한 살육이나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죄 없이 신하를 살해하는 군주는 군주로 인정되기 어렵고, 그 자식에 의한 복수도 긍정된다. 이는 인(仁)을 해치는 자를 적(賊)이라 하고 의(義)를 해치는 자를 잔(殘)이라 하면서, 잔(殘)의 무리는 더 이상 군주가 아니라 일개 필부(匹夫)에 지나지 않으며, 필부를 토살(討殺)하는 것은 불가하지 않다고 하는 『孟子(梁惠王·下)』의 방벌(放伐)사상과 상통하는 것이다(94~95쪽).

5) 『주역(周易)』의 곤괘(坤卦)에서 나오는 말로써, “서리가 내리면 차가운 얼음이 이른다 라고 하여 일의 조짐을 보고 미리 그 화(禍)를 대비하라는 이상(履霜)의 경계(警戒)를 말한다.

이하에서는 태종의 집권기간에 있었던 권력정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사건, 즉 이거이(李居易) 부자(父子) 사건과 민씨(閔氏) 형제 사건 그리고 심온(沈溫)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그가 어떻게 양권을 위한 가치치기를 위해서 ‘술’(術)을 구사하고 있으며, 그러한 ‘술치’(術治)가 어떻게 전개되고 변형되어 가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⁶⁾

III. 양권의 발현(發顯): 이거이 부자(父子) 사건

이거이 부자는 태종 4년 10월 18일 왕의 밀교(密敎)에 의해서 태종 1년(신사년)에 “금상(今上)과 세자를 제거하고 상왕(정중)을 섬기고자 하였다”는 죄목으로 역모에 몰리고 바로 고향인 진주에 내쳐 진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간(臺諫)의 상소로 죽음의 위기에 몰린다. 이틀 후인 10월 20일 태상왕 이성계의 종친에 대한 특별한 대우의 뜻을 확인한 태종이 이거이 부자에 대한 불벌(不罰) 의사를 밝힘으로써 위기국면에서 벗어나고, 외방(外方)에 안치하는 선에서 사건은 마무리된다. 이후 태종은 ‘춘추의 법’에 따라 이거이 부자를 처단하라는 대간의 상소(上疏)를 거부하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보존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에서 제기되는 의문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거이의 모역(謀逆)은 과연 사실일까. 둘째, 모역이 사실이라면 태종은 그 사실을 알고서도 물어두면서 이거이와 함께 정사(政事)를 해오다가, 4년이 지난 후에 와서 갑자기 끄집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셋째,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밀교를 내린 태종의 의도는 무엇이며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모역을 둘러싼 논쟁과 혼란은 어떠한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 것일까?

6) 여기서 태종이 과연 『한비자』를 읽었는가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실록』 어디에도 그가 『한비자』를 읽었다는 구절은 없다. 따라서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한비자』가 한반도에 언제 들어왔는지, 그리고 당시 어떤 유통경로를 거쳐서 얼마나 읽히고 있었는가를 밝힘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가능성을 추적해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이와 관련한 문헌학적인 연구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을 밝히는 것이 본고의 일차적인 목적도 아니다. 따라서 본고는 그와는 역으로 실록에 나타난 태종의 언행 분석을 통해 그가 『한비자』를 읽었을 수도 있다는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이러한 의문들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던 무인년(戊寅年, 1398)년의 시점에서부터 이 사건이 발생하는 태종 4년까지에 걸친 이거이 부자와 태종의 행적을 추적해 봄으로써 밀교가 내려지기 이전까지 태종과 이거이 사이에 존재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이후에 태종을 중심으로 어떠한 파장을 일으키며 전개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미와 그 속에서 나타나는 태종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무인년인 태조 7년 8월에 이거이 부자는 이방원과 함께 사병혁파(私兵革罷)에 저항하며 거병(擧兵)을 주도하였고 정도전 일파를 제거함으로써 정사(定社)공신에 오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거이 부자는 세자 방석(芳碩)뿐만 아니라 방번(芳蕃)을 자신들의 임의로 제거하였다. 이방원은 자신의 허락 없이 왕실의 종지(宗枝)를 해쳤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그가 당시 세자인 방석을 어떻게 처리하고자 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적어도 실록에서는 이거이 부자가 세자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전하고자 했던 방번까지 살해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거이 부자가 나에게서 알리지도 않고서 도당(都堂)에게만 의논하여 나의 동기(同氣)를 살해했는데 **지금 인심(人心)이 안정되지 않은 까닭으로 내가 속으로 견디어 참으면서 감히 성낸 기색을 보이지 못하니, 그대는 이 말을 입밖에 내지 말라**(『태조실록』 7년 8월 26일 기사).

태종은 왕실의 종지를 해친 이거이에 대해서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는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고, 그 시기를 참고 기다리면서 처벌의 수위와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인년의 정변이후 전개된 정국 속에서 최대의 현안이 되었던 것은 다시 사병혁파 문제였다. 비록 태종 자신이 정도전 일파의 사병혁파 시도에 대해서 “어린 서자(庶子)를 세자로 세워 동모형제(同母兄弟)를 제거하려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면서 거병하였으나, 권력을 장악한 이후 왕권을 안정시키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또 다른 변란의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과

제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정종은 대간의 상소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하여 세자(이방원)와 의논한 뒤 사병혁과를 시행한다(『정종실록』 2년 4월 6일 신축).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사병혁과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다. 그 중에서도 정사(定社) 일등공신이며 왕실의 종친(宗親)이며 최대의 사병세력이라 할 수 있는 이거이 부자의 반발과 저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사병혁과를 계기로 이거이가 주도하여 먼저 난을 일으킨다면 오히려 처리하기가 쉬웠을 테지만, 그는 불평만 하는데 그치고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이 문제는 대간에서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함으로써 수습되는데, 그 상소에서는 “이거이를 영계림부사로 삼아서 그 부(府)에 안치하고, 일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판관(判官)으로 하여금 부의 일을 전적으로 다스리게 한다면, 훈친을 우대하여 차마 폐출하지 못하고 작위를 주는 은혜를 잃지 않을 것이고, 또한 국가에서 훈친을 보전하고자 하여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이미 정해진 법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상언하고 있다(동, 6월 1일). 이에 따라 정종은 이거이를 전장(田莊)에 안치하도록 명하고, 이로써 일단락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거이는 3개월 후인 정종 2년 8월 1일 조박(趙璞)과 권잔(權瓘)이 자신과 조준(趙濬)을 포함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질심문을 위해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고, 9월 8일에는 판문하부사로 임명되어 정계에 복귀하고, 태종이 즉위한 11월 13일에는 좌정승에 오른다. 그렇지만 자신은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우정승 하윤이 실권을 가지고 전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을 좌정승에 임명한 태종의 의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정종실록』 2년 12월 1일 신묘). 그리고 불과 4개월 만에 재이(災異)의 책임을 이유로 하윤이 사임하자 동반 사임하는데, 이에 대해 실록에서는 태종은 다만 이거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잠시 좌정승 자리를 맡겼을 뿐인데 그가 이를 알지 못하고 사면할 뜻이 없어서 하윤이 임금께 고하고 재이를 청탁하여 사직한 것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1년 전의 사병혁과 때의 일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이거이 부자에 대한 ‘의심’과 ‘미움’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태종실록』 원년 3월 28일 정해).

앞에서 말한 밀교의 내용에 따르면 이때 이거이는 금상(今上)과 그 아들을 베고 상왕(정종)을 섬기자는 모역을 의도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그가 모역을 꾀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1년 전 ‘방간(芳幹)의 난’(정종 2년,

1400년에서 볼 수 있듯이 태종은 이미 강력한 군사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고 사병조차 없는 자신이 거기에 대항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함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무인년 정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충의와 명분보다는 공(功)과 작록(爵祿), 그리고 자기보전이라는 현실적 이익을 보다 중시해왔기 때문에 정승과 부원군이라는 부귀(富貴)를 버리고 무모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당시의 정국 역시 난 이후에 안정되어 있었다. 이거이 부자는 더 이상 태종에게 위협이 될 만한 존재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종은 여전히 그가 모역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의심을 품고 있었다.

이후 이거이는 영의정부사로 다시 복귀하고(태종 2년 4월 18일), 조사의(趙思義)의 난이 일어난 이해 11월 이후에는 군직(軍職)인 좌도통도사까지 겸직한다. 이거이에게 병권의 상징인 군사권을 부여했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난을 제압하기 위하여 믿을 수 있는 신하들에게 권한을 이임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태종에게 있어서 그가 더 이상 왕권에 위협세력이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사의의 난의 발생에서부터 진압되기까지의 진행과정은 태종의 왕권과 병권이 강력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후로 한 정국 역시 안정되어 있었다. 무인정변 이후부터 계속 문제가 되었던 태상왕(태조 이성계)과 태종과의 꺾끄러운 관계도 이로써 어느 정도 해소되어가는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태종 4년 10월 18일에 태종이 의안대군 이화(李和)와 완산군 이천우(李天祐)등을 불러 다음과 같이 밀교(密敎)하면서부터 이거이 부자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역모에 휘말리게 되는데, 밀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사년(태종 1년, 1401년)에 조영무(趙英茂)가 나에게 고하기를, ‘살 때 이 거이의 집에 가니, 이거이가 신에게 이르기를, ‘우리들의 부귀한 것이 이미 지극하나, 종시(終始) 보존하기는 옛 부터 어려우니 마땅히 일찍이 도모해야 한다. 상왕(上王)은 사건을 만들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금상(今上)은 아들이 많지만, 어찌 다 우리들을 연휼(憐恤)하겠는가? 마땅히 이를 배어 없애고 상왕을 섬기는 것이 가하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를 듣고, 조영무에게 경계하여 누설하지 말도록 한 지 이제 이미 4년이다. 이거이도 이미 늙었고, 조영

무도 또한 곧 늙을 것이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유고(有故) 하면 이 말은 변별(辨別)하기가 어렵다

태종은 이거이를 궐내에 비밀히 불러 조영무와 대질하여 변명하게 하고, 유사(攸司)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였는데, 종친과 공신 35명이 예궐하여 알게 하기를 청하자 비로소 종친·공신·삼부·대간을 모아놓고 증거하여 듣도록 하였다. 여기서부터 이거이 부자 문제는 역모(逆謀)사건으로 전환되면서 ‘춘추의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대간의 상소가 이어진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태종은 공신을 보전키로 한 맹약(盟約)과 종친에 대한 사정(私情)을 이유로 내세워 춘추의 법에 따르기를 거부한다. 그리고 이후 논의는 외형상 태종과 대간사이에 있어서 공법에 따른 처벌과 공신·종친에 대한 사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태종의 말대로 삼혈동맹(歃血同盟)을 이유로 이거이 부자를 보전하고자 한다면, 처음에 왜 이 문제를 제기했는가? 어차피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면, 당시 조영무가 태종에게 이거이 부자의 금장지심을 고변(告變)한 상황에서 조영무로 하여금 경계하여 누설하지 말도록 하게하고 자신은 모른 척하고 덮어둔다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사건이었다. 구지 4년 전의 일을 들추어냄으로써 역모에 따른 춘추의 법과 공신·종친에 대한 사정사이에서 고민하며 자승자박(自繩自縛)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태종이 이 사건을 들추어내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이거이와 조영무가 이미 늙어서 한 사람이라도 유고하면 그 말을 변별하기가 어려우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미 그들은 늙어서 더 이상 왕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한 그들이 유고하면 이 사건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고 끝이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종은 4년 전의 일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역모로 몰아갔다. 이는 그가 이거이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처벌을 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이거이의 움직임을 기다려왔지만, 이제부터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거이 문제를 정리하고자 했던 것이다.

여기에는 이거이가 객관적으로 왕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보다는, 태종 자신의 주관적인 인식이 더욱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태종은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만큼 정권의 취약한 정통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이미 방간의 난과 조사의의 난 등을 겪으면서 현실화 되었다. 그리고 또다시 누군가가 난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강박감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에게 도전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세력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한 이거이지만, 왕실의 종지를 해친 바 있으며 한때는 최대의 사병세력이었고 여전히 종친이자 공신이라는 세도를 누리고 있으며 사병혁파를 전후로 하여 불만을 가지고 자신에게 저항했던 기억이 그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다.

엄밀히 살펴볼 때 이거이 부자가 태종과 그 아들을 제거하고 상황인 정종을 섬기고자 했다는 태종의 밀지는 사실 조영무의 말을 제외하고는 실체가 없는 주장이었다. 이것은 태종이 그러한 중대한 역모사건을 끝까지 파헤치기보다는 도리어 중간에서 사정(私情)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어쩌면 “두 아들이 부마(駙馬)가 되었고, 자신이 정승이 되었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그러한 말을 하였겠는가”라는 이거이의 변명이 더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태종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거이 부자에 대한 숙청을 시도했다. 사건의 진위여부 자체보다는 잠재적 위협세력에 대한 불안감과 강박감이라는 주관적 인식과 함께 권신(權臣)을 제거해야 한다는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단행된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상벌이라는 미끼를 던져서 상대의 마음을 떠보면서 움직임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서 신하를 제어하는 정치적 술(術)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비는 상벌을 통해서 군주가 신하를 제어하고 그 마음을 떠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상벌(賞罰)이란 나라를 다스리는 이기(利器)이다. …군주가 상줄 뜻을 보이면 신하 쪽이 그것을 줄여서 (자신의) 은덕으로 삼으며, 군주가 처벌할 뜻을 보이면 신하 쪽이 그것을 더하여 (자신의) 위엄을 삼으려고 한다. 군주가 상줄 뜻을 내보여서 신하가 그 권세를 이용하고 군주가 처벌할 뜻을 내보여서 신하가 그 위력을 타게 되는 것이다(「諭老」).

태종은 때로는 좌정승이라는 높은 자리와 상을 내려주면서 이거이가 그것을 은덕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터트리는지, 혹은 그 권세를 이용하여 ‘다른 일’을 도모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때로는 자리에서 물

러나게 하거나 중요한 정사로부터 소외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불만으로 모반이나 난을 피하고 자신의 위력을 내보이려하는지를 관찰하며 기다렸다. 이처럼 태종은 이거이에 대한 처벌의사를 가지게 된 시점에서부터 상벌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살피면서, 움직임을 유도하고 주시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를 역모로 몰아가기 직전까지도 군권(軍權)을 부여하고 말(馬)을 선물로 내려주어 포상함으로써 그의 세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태종이 유가적 군주에 충실하고자 했던 군주라면 정종이 그랬던 것처럼 외방에 편척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을 것이다. 그것이 ‘훈친에 대한 인정’과 ‘춘추의 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유가적 해결책인 ‘권도’(權道)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태종은 4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거이 부자의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내었다. 그 바탕에서 7년 전의 무인년 정변 때의 잘못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리고 겉으로는 사정(私情)을 내세우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진실여부가 의심스러운 사건을 역모로 몰아 부치면서까지 이거이 부자에 대한 척결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훈친에 대한 인정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이거이 부자 사건을 역모로 몰아가면서도 대간의 상소에 따라서 춘추에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볼 때 이거이 부자 사건에서 보인 태종의 행위는 유가적 군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태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때로는 본심과는 정반대의 말로 본심을 감추면서 신하들의 행동을 유심히 살피고 기억해놓는다. 그러면서 신하들의 공과(功過)를 저울질하면서 상벌의 수위를 조절해갔다. 태종에게 있어서는 비록 이거이가 정사(定社)에 참여한 공은 크지만 그 과정에서 방법을 해한 과(過)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방간의 난에 참여하여 좌명공신에 오른 것도 고려해야 하지만, 사병혁파에 불만을 품고 불평하면서 저항한 일 또한 고려되고 있다. 그리고 이거이 부자를 연휼(憐恤)하고 관대히 대했던 정종이 퇴위하고 자신이 즉위하자 종시(終始)를 보존하고 살길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영무와 의논했다는 사안에 대해서 이를 모반의 기미로 인식하고 단죄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태종은 이거이와 같은 세력 있는 신하를 제거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공과에 따른 상벌을 내세우면서 명분을 쌓아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행적을 들추어내고 상대의 약점을 몰래 이용하면서 신하를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태종이 무인년정변 이후에서부터 이 사건의 진행과정까지에서 이거이 부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처벌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처음부터 반란을 유도하거나 모역사건을 꾸며내어서 이를 명분으로 죽이려고 하였는지, 아니면 공신녹권(功臣錄券)과 직첩(職牒)을 회수하고 외방에 안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권신의 위세를 누르고 왕권과 왕실의 권위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가 의도했던 결과에 도달하기 전에 이 사건은 태상왕의 개입으로 변형되어, 처음에 그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즉 태종이 밀교를 내린지 이틀 후인 10월 20일에 태상왕에게 헌수(獻壽)하는 자리에서 이거이의 일을 고하니, 태상왕이 중친에 대한 예우를 특별히 지시했던 것이다. 이후 태종은 태상왕의 뜻을 충실히 받들어서 밀교로 인해 이미 반역죄로 탄핵되어 고향인 진주에 안치된 바 있는 이거이가 천수(天壽)를 다하도록 보호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을 처벌하라는 대간의 상소는 묵살하였다.

그동안 이거이 부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던 태종의 술(術)의 정치는 이성계의 개입으로 일단 중단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술치가 여기서 끝이 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또 다른 세력 있는 신하인 외척(外戚)으로 그 대상을 바꾸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후 민씨 형제와 관련된 많은 옥사(獄事)에서 태종의 술치는 보다 세련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IV. 양권의 완성(完成): 민씨 형제 사건

태종 6년(1406) 8월 18일에서 26일까지 일주일여에 걸쳐서 일어난 제 차 전위(傳位) 사건은 비상사태를 맞아 외척 및 공신세력의 움직임을 살펴봄으로써 잠재적 위협세력을 색출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태종의 정치적 목적과 계산 속에서 일어

7) 『태종실록』 4년 10월 20일 무자. 이 기사에서 태상왕 이성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너의 마음으로 재결(裁決)하였겠지만, 회안이 이미 쫓겨나고, 익안이 이미 죽고, 상왕이 출입하지 않으니, 친척 가운데 살아 있는 자가 몇 사람이나? 일이 이루어질 때에는 돕는 자가 많지만, 일이 낭패할 때에는 돕는 자가 적다. 사생지간(死生之間)에 돕는 자는 친척 같은 것이 없다. 네가 그들을 보전하면, 국가의 재앙이나 천변(天變)·지과(地陷)가 적어질 것이다. 이 일은 큰 것인데, 나는 장차 큰 근심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났다. 그 결과 그는 다음 차례로 누구를 숙청해야하는지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었다. 잠시 시간을 저울질 하던 태종이 처리의 결심을 굳히게 된 계기는 전위사건이 있는 지 10여 개월이 지나서였다. 태종 7년 6월 8일에 황업(黃儼)이 고명(誥命)을 받들고 왔을 때 중국황실과의 혼인문제가 불거져 나와서 태종은 세자가 이미 혼인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이후 민재(閔齊)와 민무(閔無筭)·민무질(閔無疾) 그리고 조박과 하운 등이 주상에게 의논하지 않고서 자신들끼리 대국(大國)의 원조를 얻고자 하는 차원에서 다시 논의하였던 것이다. 이를 알게 된 태종은 노하여 그들을 국문하도록 지시하면서 이를 세자에게 의탁하여 세력을 강화하려는 민씨들의 위험한 음모로 간주한다(『태종실록』 7년 6월 13일 을미). 여기에는 명(明)의 황실을 끼고서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려는 것일지 모른다는 태종의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자신의 권력기반을 뒤흔들 수 있는 세자의 배후세력을 제재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던 것이다.

태종은 이로부터 18일 후 영의정부사 이화의 상소를 계기로 하여 본격적으로 민씨 형제에 대한 숙청작업에 나선다. 이화의 상소문에서 드러난 민씨 형제의 죄목은 크게 두 가지 이다. 첫째는 태종이 지난해 내산(內禪)하고자 할 때 기뻐하는 빛이 얼굴에 나타났으며 복위(復位)한 뒤에는 이를 슬프게 여겼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세자 이외에는 왕자 가운데 영기(英氣) 있는 자는 없어도 좋다”라고 하여 종지를 제거하고자 하는 금장(金將)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다(『태종실록』 7년 7월 10일 신유). 만약 이 같은 상소가 사실이라면 ‘춘추의 법에 따라 간단히 처벌할 수 있는 사안으로 시간을 둘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태종은 이 사건이 제기된 지 4년이 지난 태종 10년에야 민씨 형제를 처단한다. 왜 일까? 그것은 이 사건이 춘추의 법만으로는 처리될 수 없는 측면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하나의 측면은 이거이 부자 사건과 마찬가지로 태종이 표면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은 부원군(府院君) 부처(夫妻)와 처남인 민씨 형제에 대한 사정(私情) 때문에 결단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주장이다(『태종실록』 7년 9월 18일 무진). 그러나 이거이 때와 마찬가지로 이 역시 실질적인 이유는 되지 않는데, 태종은 이미 외척 세력에 대한 척결의지를 여러 번 밝힌 바 있다(『태종실록』 7년 6월 13일 을미). 그리고 마지막까지 장모인 송씨(宋氏)에 대한 배려를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은 장모가 죽기 이전에 민씨 형제를 처단했다는 점에서 사정(私情)은 그 이유가 될 수 없다.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태종이 여기에서 술(術)을 구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태종은 민씨 형제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서 기다리면서, 그들이 걸려들자 ‘금장지심’이라는 올가미를 씌우면서 공론을 몰아갔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숙번(李叔蕃)등을 통해서 헌부(憲府)의 상소를 주도한다. 4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명분을 축적함과 동시에 민씨 형제의 당여를 색출해내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는 ‘어쩔 수 없이’ 공론에 따라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모양새를 만들어 감으로써 처리에 있어서 신중을 기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유가에서 말하는 춘추의 법에 따른 난신적자의 제거과정이라기 보다는, 법가에서 말하는 권신을 제거하기 위한 가지치기의 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한비는 세력 있는 신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마치 달이 이지러지듯이’[虧之若月]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크게 법도에 어긋난 자는 깎아 버리고 작게 어긋난 자는 덜어낸다. 깎거나 덜어 버리는 데 있어서도 원칙을 세워 민이 한통속이 되어 군주를 속이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깎는 것은 달이 이지러지는 것처럼 하고 덜어내는 것은 열을 가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揚權」).

이제 이와 같은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서 먼저 민무구에 대한 죄목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태종 7년 7월 10일의 이화의 상소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전위사건 중에 나타난 민무구의 ‘얼굴빛’이었다. 태종은 이화의 상소이후 두 달이 조금 안 된 9월 18일에서는 민무홀과 민무회를 불러놓고 외방에 안치된 그들의 형인 민무구와 민구질이 왜 불충인지를 설명한다. 여기에서 민무구의 ‘얼굴빛’의 의미와 그를 함정으로 몰아갔던 태종의 정치술을 확인할 수 있는데, 태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루는 민무구와 이숙번이 와서 알현(謁見)하기에, 내가 왕위를 사양하려는 연고를 말하니, 이숙번은 대답하기를, ‘주상이 이러한 뜻을 내신 것도 역시 하늘이 시킨 것입니다’고 하고, 민무구는 성을 내면서 말하기를,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상이 만일 사위(辭位) 한다면 신(臣)도 또한 군무(軍務)를 사임하기를 청합니다’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네 말이 지나치다. 어린 임금의 즉

위하면, 너희들이 군관(軍權)을 맡아서 나를 따라 어린 임금을 돕는 것이 옳지, 어찌하여 군권을 사양하고자 하는가!

처음에 태종이 선위(禪位)의 뜻을 보이자 이숙번이 이를 ‘하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숙번의 이 말은 본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기보다는, 민무구를 끌어들이기 위한 함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록에서는 이화의 상소를 통해 민씨 형제에 대한 공격에 나선 태종이 이숙번과 모의(謀議)하여 그들의 불충한 음모를 처단할 방법을 논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⁸⁾ 당시 태종과 이숙번은 민무구를 제거하고 그것을 정당화할 구실을 찾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태종의 전위 의사 표명은 본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무구와 이숙번이 함께 알현해있던 자리를 이용해서 그의 뜻을 떠보려고 던진 일종의 함정이었고, 민무구는 처음에는 여기에 걸려들지 않았다. 그는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성을 내고 자신의 사임을 청하면서까지 불가함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몇 일 후에 민무구가 다시 찾아와서 주상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는 정승들의 뜻을 전달한다. 이를 듣고 태종은 크게 기뻐하였다. 민무구가 뒷에 걸렸기 때문이다. 이를 실록에서는 태종의 말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하루는 민무구가 나에게 말하기를, ‘정승들이 모두 신에게 말하기를, ‘주상의 뜻이 이미 정하여졌으므로, 신 등이 감히 고집할 수 없으니, 미리 선위(禪位)할 여러 일을 준비하여 주상의 명령을 따르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내가 듣고 심히 기뻐하였는데, 조금 뒤에 정승들이 다시 백관을 거느리고 대

8) 실록에서는 태종이 민씨 형제를 제거하는데 이숙번을 활용했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다 (『태종실록』 7년 7월 10일, 7월 12일, 16년 6월 4일, 6월 21일, 『세종실록』 즉위년 10월 28일 등).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하여 태종 7년 7월 10일 기사에는 민무질이 변명을 요청하자 태종은 관련자들을 대질신문하는데, 여기서 윤항은 민무질이 자신의 집에 와서 말하기를 “듣건대 전일에 주상이 광연루에 나가서 이숙번에게 이르기를, ‘지금 기뻐 기운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아래에 불순한 신하가 있기 때문이라’ 하니, 이숙번이 대답하기를, ‘불순한 신하는 제거하는 것이 가합니다’고 하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7월 12일 계해에는 임금이 이숙번으로 하여금 하운에게 고하여 민무구 등의 불충한 음모를 고하고 그 처치의 마땅한 방법을 의논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하운이 염연히 송구스럽게 여기지 않고 대답하기를 “마땅히 경한 법전으로 처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이에 임금이 다시 이숙번을 시켜 하운에게 말하기를 “경의 말은 곧 안창후(安昌侯 장유(張禹))와 같다”고 하면서 하운을 비난한 바 있다.

귓 뜰에서 간쟁(諫諍)하였다. 내가 민무구에게 이르기를, ‘내가 경(卿)의 전날의 말을 이미 여러 대언(代言)에게 말하였는데 지금 정승들이 어찌하여 다시 저렇게 구는가?’고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들은 것은 정승 중의 한 사람이 남몰래 한 말입니다. 전하가 어찌하여 신의 말을 대언(代言)에게 누설하셨습니까?’ 하기에, 대답하기를 내가 정승들이라고 말하기에 나는 반드시 여러 사람의 의논이라고 생각하였었다’고 하였다. 이에 선위하는 일을 실행하지 않았다. 여러 신하들은 칭찬 것을 허락받았다고 기뻐하면서 모두 배하(拜筓)하고 물러갔는데, 민무구는 들어와 알현할 때 성낸 빛이 있었으니, 내가 그 뜻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어찌 인군(人君) 되기를 좋아하였겠는가!

민무구가 뒷에 걸리자 태종은 그의 말을 여러 대언(代言)에게 의도적으로 누설하고, 원망하는 민무구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의논이라고 생각했었다”라고 둘러댄다. 이후 태종이 산울빼미의 울음소리를 핑계로 선위를 그만두자 민무구는 비로서 전위라는 것이 자신을 도모하기 위한 함정이었음을 깨닫고 분노한다. 이런 상황에서 태종이 또다시 지난 번 군권을 사임코자한 것을 물어보자 성을 내며 좋지 않은 기색으로 자신이 사임하면 태종의 사위(趙大臨)도 사임해야 함을 말한다

또 하루는 민무구가 곁에 있기에, 그 뜻을 보고자 하여 말하기를 “내가 지난 번에 군권을 사임하고자 하였는데, 지금 사임할 테나? 내 사위 조대림(趙大臨)도 군권을 해임시키겠다’고 하니 민무구가 매우 성을 내어 좋지 않은 기색으로 말하기를, “신을 만일 해임하면 전하의 사위도 해임하여야 합니다”고 하였다. 그 마음이 불경하고 말이 천박하기가 이와 같았다.

여기서 민무구의 ‘천박한 말’은 어찌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 것이다. 자신을 모함에 빠뜨려서 곤란하게 하고 또다시 군권 사임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태종의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로 드러내놓고 지적할 수 없지만 심한 배신감을 느꼈던 것이다.

여기까지가 태종 자신의 입으로 밝히고 있는 민무구의 ‘얼굴빛’과 관련된 사안의 진상이다. 앞서 이화의 상소가 지적하고 있는 민무구의 첫 번째 죄목은 사실은 정반대였다. 선위표명시 민무구는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태종이 정승들의 선위

수용 의견을 전해 들었을 때 기뻐했다. 복위표명시 민무구는 화를 냈다. 그러나 그것은 복위자체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태종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군권 사임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민무구의 잘못은 다만 이러한 상황들을 참지내지 못하고 얼굴과 입으로 드러낸 것뿐이었다.

이화의 상소에서 지적하고 있는 민무구의 두 번째 죄목은 그가 종지를 해치려는 금장지심을 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태종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옛날 내가 민무구에게 이르기를, ‘내가 장의동(藏義洞) 본궁(本宮)을 헐어서 조순(曹恂)의 옛 집터에다 고쳐지어서 한 자식을 살게 하고, 가까운 이웃 정희계(鄭熙啓)의 집을 사서 한 자식을 살게 하여, 형제들로 하여금 서로 따르고 우애하고 공경하게 하는 뜻을 돈독하게 하려 한다’고 하니, **민무구가 대답하기를, ‘그렇지만 반드시 그 사이에 유액(誘掖, 인도하여 도와줌)하는 자가 없어야만 가합니다’고 하였다. 민무구의 이 말은 대개 여러 아들이 난을 꾸밀 것을 염려하여 제거하고자 한 것이니, 세자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내게 대해서는 불충함이 이미 이와 같았다. 어찌 그 아버지에게는 박하게 하고, 그 아들에게는 후하게 할 수가 있겠는가**

여기서 태종은 형제간에 우애를 강조하는 자신의 뜻과 달리 민무구가 ‘유액’을 말하면서 형제간의 불화와 반목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형제간에 우애를 강조해도 누군가가 인도하여 도와주면 형제들 사이에 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태종은 민무구가 장차 세자가 집권했을 때 이러한 난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 다른 왕자들을 제거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무구가 유액을 말했다고 해서, 그가 바로 종지를 제거하고자 하는 금장지심을 품었다고 말하는 것은 비약이다. 민무구의 염려는 지난 1·2차 왕자의 난을 돌이켜 볼 때 어찌면 당연하고 원론적인 것이었다.

문제는 이것을 바로 역모로 몰아가고 있는 태종의 인식이다. 태종은 피의 숙청을 수반하는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이복형제들을 무참히 참살했다. 친형인 회안군 방간과도 칼을 겨누며 권력다툼을 벌였고 유배를 보내야 했다. 그가 형제들에 대한 우애를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자신의 모

습에 대한 일종의 ‘속좌’라고 할 수 있다. 민무구에 대한 태종의 과민반응은 과거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자각임과 동시에, 권력을 찬탈해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일종의 불안감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박포(朴苞)의 꾀에 끌려 난을 일으켰던 방간이 그랬던 것처럼, 언제 또 누군가가 난을 선동하여 왕실의 종지를 해칠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이 그로 하여금 민무질의 말을 꼬투리 잡아서 대역(大逆)사건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태종이 만약 정상적으로 왕위에 오른 군주라면, 그래서 덕치(德治)와 인정(仁政)을 실천하고자 하는 군주라면 신하의 표정과 감정에서의 실수 하나 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확대해석하면서 이처럼 모역의 울가미를 씌우고 사건을 몰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태종의 행위는 ‘춘추의 법’이라는 공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세력을 위협할 수 있는 외척들을 제거함으로써 권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필요와 술수가 결합된 ‘가지치기’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태종은 그물을 던지고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속임수를 사용한 것이다. 한비는 군주가 사용하여야 할 술책으로 일곱 가지[七術] 들고 있다.

첫째, 많은 증거를 모아 대조해 보는 일이다. 둘째, 죄지은 자를 반드시 벌주어 위엄을 내세워 보이는 일이다. 셋째, 공적 있는 자를 반드시 상을 주어 그 재능을 충분히 다하게 하는 일이다. 넷째, 하나하나 말을 들어서 그 실적을 추궁하는 일이다. 다섯째, 고의로 속임수를 쓰는 일이다. 여섯째, 알면서 모르는 척하며 질문하는 일이다. 일곱째, 말을 일부러 뒤집어서 반대로 해 보이는 일이다(「七術」).

여기서 첫째부터 넷째는 정술(正術)이고, 나머지 세 가지는 사술(邪術)이라고 할 수 있다. 사술의 첫 번째인 간악한 일의 실정을 알기 위해서 고의로 거짓 속임수를 쓰거나 뒤바뀌 말하고 반대행동을 하여서 의심스런 것을 시험하는 것을 한비는 ‘도언’(倒言)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통해서 군주는 신하를 제어할 수 있는데, 그 사례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위(衛)의 사공(嗣公)이 사람을 시켜 나그네 차림으로 관문(關門)을 지나가게 하였다. 관문지기가 그를 엄하게 취조하였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관문지기에 매달렸다. 관윤(關尹)이 바로 그를 풀어 주었다. 사공이 관윤에게 일러 말하기를 “어느 날 나그네가 자네의 관문을 지나간 일이 있다. 자네에게 돈을 주어서 그 때문에 자네가 그를 보냈다”라고 하였다. 관문지기가 이에 크게 두려워하여 사공이 명찰하다고 생각하였다(『內儲說 上』).

태종은 여기서 나오는 사공(嗣公)과 유사한 방식으로 ‘전위’라는 함정을 놓고 기다리면서 자신의 의도를 숨기면서 반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민씨 형제들을 끌어들이고 처단해갔다. 이와 동시에 그들에게 당부(黨附)하는 세력이 많아서 그 근거를 뿌리 뽑기가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감추고 조용히 지켜보면서 누가 민씨에게 아부하고 있는지, 그 뿌리를 캐간다(『태종실록』 7년 9월 25일 을해). 그러면서 한비가 「칠술(七術)」과 「주도(主道)」 그리고 「이병(二柄)」에서 강조한 바대로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본심을 가리고 신하들이 그 본바탕을 드러내기를 기다린다.⁹⁾ 춘추의 법대로 민무구·민무질을 처치할 것을 중용하는 대간의 상소에 대해서 “비뿔 것 없다”고 대답한다(『태종실록』 7년 11월 21일 신마).

당여색출작업이 성과를 거두고 동시에 죽일만한 명분이 충분히 쌓이는 시간을 기다리던 태종은 회안군과 민씨 형제를 동정하고 임금을 비판한 윤목(尹穡) 등을 국문케 하고(태종 9년 9월 8일), 10인이 당여로 색출되자 태종은 좀 더 주모자를 찾아낼 것을 지시하고, 이무(李茂)가 거기에 개입된 정황이 드러나자 처형한다(동, 10월 5일). 여기에서도 앞서 이거이 부자 사건을 통해 살펴본 태종의 술(術), 즉 사후에 약점과 잘못을 들추어내면서 권신(權臣)을 제거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무의 경우 10여년 전 무인(戊寅)년 거병 때 이방원측과 정도전측을 오가며 기회를 살폈다는 죄목이 추가된다(『태종실록』 9년 10월 3일 기해). 이제 남은 것은 명분(名分)인데 이무를 벤지 5개월이 지난 후인 태종 10년 3월 17일 성석린(成石璘), 김한로(金漢老), 조영무(趙英茂) 등 대신들이 때가 되어 명분이 충분히 쌓였음

9) 『韓非子』, 「主道」. “(君主)虛靜無事 以闇見疵 見而不見 聞而不聞 知而不知”; 「二柄」. “去好去惡 群臣見素.”

을 주장한다. 특히 여기서 성석린은 “나라라는 것은 한 사람의 사유물이 아니니 신료의 말을 어찌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라고 하면서 태종으로 하여금 공론에 따를 것을 종용한다. 이에 대해 태종은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말로 회피하고 마지못해서 따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자진케 한다

이와 같은 민씨 형제 제거과정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여러 공신세력간의 충돌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성준은 조선개국 초기의 정치세력을 크게 개국공신계(開國功臣系)와 고려구가세족계(高麗舊家世族系)로 구분하면서, 전자는 ‘1차 왕자의 난’ 이후 변화가 생기기는 했으나 계속해서 정계의 지배세력이었던 반면 후자는 약세를 면치 못하였는데, 이 두 세력사이의 정면충돌은 민무구 형제의 옥사를 계기로 표면화되었다고 보고 있다.¹⁰⁾ 그리고 최승희는 이 두 정치세력뿐 아니라 태종공신계(정사·좌명공신), 상왕(정종)계, 태상왕(태조)계, 세자(禛)계, 척족민씨계 등도 언급하면서 개국·정사·좌명공신 등 공신들은 정치세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었고, 태종은 이들이 강력한 정치세력집단으로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책으로 이들 계파 가운데 유력한 자들을 균형 있게 탁용(擢用)하여 상호견제하게 하는 것으로 강력한 정치세력화를 억제하고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¹¹⁾ 한편 유주희는 태종집권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주요정치세력으로 등장한 개국동조세력(정사·좌명공신)을 견제하고 정치의 주도권을 잡기위해서 태종이 개국공신세력을 이용하여 민씨 형제의 옥사를 일으켰다고 지적한다.¹²⁾

위와 같은 설명대로 어찌면 태종 본인이 각 공신들을 분류하고 이 세력들이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 왕권강화를 추구해가고자 의식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설령 이러한 선행연구의 주장이 옳다고 해도, 민씨 형제에 대한 숙청작업은 한비자가 말한 ‘가지치기’의 측면이 있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즉위초의 삼혈동맹(敵血同盟)에서 알 수 있듯이 공신세력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한 후에, 자신의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적 반대세력의 색출과 제거를 목표로 한 술(術)의 구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앞서 제시한

10) 김성준, 앞의 논문, 620~621쪽.

11) 최승희, 앞의 논문, 72~83쪽.

12) 유주희, 앞의 논문, 105~107쪽.

바와 같이 신하를 나무에 비유하자면 군주 된 자는 그 나무를 자주 베어 가지가 뻗어 나가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나뭇가지가 무성하게 뻗으면 장차 공가(公家)의 문을 막게 될 것이고 사가(私家)로 사람이 모여들면 조정(朝廷) 안은 텅 비어 군주는 장차 이목(耳目)이 가려지고 갇히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한비의 충언이다. 태종대에 있어서 공가의 문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한 세력 그리고 앞으로 세자를 세력기반으로 삼아 사가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세력은 바로 외척인 민씨 세력이었던 것이다.

태종은 민씨 형제에 대한 가지치기를 마무리한 시점에서, 국가에 내외환이 없는 때라도 경계를 늦추면 언제라도 외척이 도약(跳躍)할 우려가 있으니 그들의 세력이 맹아(萌芽)하기 전에 전제(剪除)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까지 하여 외척의 폐단을 극론한 바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실례로 태종은 한당(漢唐) 이후 제왕(帝王) 때에 외척이 궁중에 들어와서 용사(用事)한 폐단을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대저 제가(齊家) 치국(治國)하는 일로 논하면, 외척으로 하여금 궁중에 가깝게 하는 것이 인군의 원대한 계책은 아니다. 방금 국가가 한가하고 안팎에 근심이 없으니 조금도 의심하고 꺼릴 것은 없으나, 그 폐단이 후에 일어날지 어찌 알겠는가? 마땅히 썩이 트기 전에 제어하는 것이 가하다 『태종실록』11년 윤12월 초2일 무오).

V. 양권의 잔영(殘影): 폐세자(廢世子)와 심은 사건

이제까지 양권의 실현수단으로써의 태종의 ‘가지치기’를 이거이 부자 사건과 민씨 형제(민무구·민무질)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¹³⁾ 그런데 한비는 여기서

13) 태종이 외척을 경계하여 그들이 하나의 당여를 이루지 못하도록 미리 썩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제2차 민씨 형제 사건(민무홀·민무회사건)은 제1차 민씨 형제 사건(민무구·민무질사건)과 동일한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다만 2차의 경우는 1차와는 달리 처음부터 가지치기를 염두 해 두고 일을 꾸민 것은 아니고, 노비변정문제로 불거진 염치용사건에 민무회가 끌려들어가는 위기의 국면에서 “세자는 우리 가문에서 자라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이를 세자가 폭로함으로써 민무회·민무홀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과정은 대신과 간관들의 상소와 태종의 거부라는 정형적인 폐단을 이루면서 진행된다.

한 길을 더 나아가서 가지치기를 하되 그 결과가 나무의 근본이 되는 몸통과 심(芯)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즉 가지치기의 목적은 나무의 근본을 보다 굳건히 하는데 있으며, 가지치기의 결과 나무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삼(芯), 곧 세자(世子)까지 해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¹⁴⁾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나무를 자주 베어 가지가 커지고 몸통이 작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지가 크고 몸통이 작으면 미풍에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미풍에도 버티지 못하면 가지가 나무 심(芯)을 해치게 될 것이다(「揚權」).

그러나 가지치기를 하는데 나무의 몸통과 심을 해치지 않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이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권신과 그 당여의 대부분이 세자와 결탁하여 자기세력의 확장을 꾀하고 있었음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민씨 형제와 외척제거의 과정 속에서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세자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 권신의 당여를 제거하고 난 이후에 과연 세자가 온전히 보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 것이다. 불행히도 양녕대군의 경우 민씨 형제를 제거하는 과정 속에서 유형·무형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여 진다. 그래서 태종은 세자 양녕의 비행과 일탈을 놓고 고심한다. ‘그래도 믿어 보자는 서연 관들의 충고를 듣고 조상(宗室) 앞에서 맹세까지 시켜가면서 살펴보려고 노력하지만(『태종실록』 17년 4월 25일 신사), 결국 지속되는 일련의 불행한 사건들¹⁵⁾로 인해 세자 스스로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 부왕의 신의를 저버리고 자신이 직접 써서 상서

14) 그런데 이와 같은 한비의 비유는 일견 앞의 그것과는 들어맞지 않는 부정합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살펴본 한비의 ‘가지치기’의 비유에 있어서는 나무는 곧 신하이고 가지는 곧 신하의 세력(권세)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이때 세자는 나무 저 건너편인 공려(公闕)의 문 속에 위치해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한비는 다시 나무를 가지와 몸통으로 구분하면서 몸통은 나무의 근본인 심(芯) 즉 세자라고 하고 가지를 신하(권신)로 상징하고 있다. 이때 세자는 하나의 나무에서 가지와 함께 붙어있는 것이다. 한비가 이런 차이를 의식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의식하지 않고서 가지치기의 결과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폐해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것 인지는 확실치 않다.

15) 『태종실록』 18년 3월 6일 병진 여기에서는 광선의 첩 어라(於馬)를 전(殿) 안에 들어있다가 발각된 일, 구중수를 통해서 매와 개를 들어 전 안에서 기르다 발각된 사건 등이 거론되고 있다.

(上書)를 함으로써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된다(『태종실록』 18년 5월 30일 기묘).

이것은 태종으로서는 의도하지 못했던 ‘가지치기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결국 세자는 폐위되고 세자를 비호하고 감싸주어 말을 꺼리었던 김한로와 황희가 폐서인(廢庶人)되거나 폄출(貶黜)을 당한다. 폐세자 결정이 있는 후 얼마 안가서 태종은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한다(동 6월 3일 임오). 그리고 세자책봉이 있는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선(內禪)을 발표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는 내선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권력행사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병권은 계속 자신이 가지고 있을 것임을 밝힌다.

주상(主上)이 장년(長年)이 되기 전에는 군사(軍事)는 내가 친히 청단(聽斷)할 것이다. 또 나라에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은 의정부·육조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여 각각 가부(可否)를 진달(陳達)하게 하여 시행하게 하고 나도 마땅히 가부에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가(可)하다(『태종실록』 18년 8월 10일 정해).

태종은 이미 이전에도 몇 차례에 걸친 전위사건을 일으키면서 내선의 의지를 표명한 바 있었다. 각각의 사건에서 그가 내선하고자 한 이유는 당시의 정국의 상황과 태종의 의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이유는 자신이 일찍 물러나서 세자에게 자리를 물려줌으로써 세력을 보다 더 공고하게 할 수 있고, 자신은 뒤에서 병권을 쥐고 조정함으로써 불측(不測)의 난(亂)을 막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었다. 그것이 자신이 일으켰던 무인년 정변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고 사직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태종이 내선(內禪) 하면서 유보해둔 병권의 문제는 그 후 불과 보름 만인 태종 18년 8월 25일에 강상인(姜尙仁)과 박습(朴翹) 등이 이를 어김으로 인해서 옥사(獄事)가 발생한다. 이들이 군(軍)에 관한 일을 주상에게만 아뢰고 상왕에게 아뢰지 않았던 것이다. 처음에 태종은 그들이 원종공신(原從功臣)이라는 이유로 면죄하고 군부(軍府)에 대한 검열과 병사의 출납을 엄격히 함으로써 기강을 바로 잡는 것으로 일단락 짓는다. 그러다가 두 달 여 지난 후에 다시 이 사건을 꺼내들고 나온다. 왜 일까? 실록에서는 이에 앞서 9월 8일에 임급(任汲) 세종의 장안(丈人)인

심온(沈溫)이 사은사로 중국에 입조(入朝)할 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심온은 강상인 사건의 한가운데에 연루되면서 위기를 맞는다.

상왕이 환관(宦官) 황도(黃稻)를 보내어 문 밖까지 심온을 전송하게 하고, 임금은 환관 최룡(崔龍)을, 중궁(中宮)은 환관 한호련(韓瑚璉)을 각각 보내어 연서역(延曙驛)에서 심온을 전송하게 하였다. **심온은 임금의 장인으로 나이 50이 못되어 수상(首相)의 지위에 오르게 되니 영광과 세도가 혁혁하여 이날 전송 나온 사람으로 장안이 거의 비게 되었다**(『세종실록』 즉위년 9월 8일 을묘).

이러한 사건은 이제까지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권신이나 외척의 발호를 철저히 경계해 온 태종의 입장에서 볼 때 우려할 만한 것으로 이 일이 있은 후에 태종은 탄식하면서, “내가 근심을 잊고자 하면서도 아직도 잊지를 못하고 있음은 간사한 사람이 있는 까닭이다”라고 말하고 있다(『세종실록』 즉위년 9월 22일 기사). 태종은 양녕을 폐위하고 충녕을 책봉하기 전후에 있어서 심온으로 하여금 특별히 몸조심을 당부해왔는데도, 심온이 이를 어기고 처신을 바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더욱 배신감을 느끼면서 분노하고 있었다.¹⁶⁾ 수차례 경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위세(位勢)를 가리고 있는 심온에 대해서 태종은 다시 한번 처벌의 필요를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심온이 입조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태종은 강상인을 심문하고, 고문 끝에 심온이 군사(軍事)는 마땅히 한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 ‘옳다고 했다는 토설(吐說)을 받아낸다(『세종실록』 즉위년 11월 22일 무진). 이에 따라 태종은 다음 날인 11월 23일에 다시 국문하면서 심온을 모역의 대간(大諫)으로 몰아간다. 그러나 강상인은 여기서 전날의 토설이 “고초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무함(誣陷)이었다”고 말한다. 이에 태종은 박윤(朴胤)을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전지한다.

16) 『세종실록』 즉위년 12월 25일(경자)에서 나오는 심온의 「졸기(卒記)」에는 충녕이 세자에 오르기 전후의 시점에서부터 태종이 심온에게 경계시켜 왔는데, 구중수의 일이 발생하여 심온이 연루되자 “내가 심온에게 것처럼 경계하였는데도, 이런 사람들과 교통하고, 또 말하는 바가 이와 같은 것은 어찌된 까닭인가”하고 분노하고 있었다.

처음 상인의 죄는 대간과 나라 사람이 두 번이나 청하였으니, 내가 그 정상(情狀)을 모르는 것이 아니나, 고식적(姑息的)으로 윤택(允)하지 않고 다만 외방(外方)으로 내쫓기로만 하였는데, 그 후에 생각해보니, **나의 여생은 많지 않고 본 바가 많으므로 이와 같은 대간(大諫)은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다시 그 일을 신문(訊問)하여 이와 같은 사태에 이른 것이다** 심온이 군사가 한 곳에 모여야 된다는 말을 듣고, 대답하기를, ‘군사가 반드시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하니, 경은 이를 알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태종은 강상인 사건을 다시 들고 나온 이유가 자신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외척의 대간(大諫)을 차단하고자 했음을 말하면서, 동시에 심온에게 대간의 죄가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면서 박은으로 하여금 그러한 모의(謀議)에 동참하도록 은근히 강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은은 “심온이 말한 바, 한 곳은 상왕전(上王殿)이 아니라 주상전(主上殿)을 가리킨 것이니 그 뜻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라고 동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심온에 대한 처벌을 주청한다. 바로 다음 날 태종은 심온을 수모자(首謀者)로 규정하고 그 당인(黨人)인 강상인·이관·박습 등을 처형하여 단죄하라고 명한다. 이후 심온은 한양에 도착하여 모든 것이 이미 끝나버린 것임을 알게 되었다. 누구보다도 태종을 잘 알고 있었던 그는 비록 자신이 역모를 꾸민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체념해버린다(『세종실록』 즉위년 12월 22일 정유).

이 사건 역시 앞서 살펴본 이거이 부자나 민씨 형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역의 구체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춘추의 법에 따라 단죄한 것이라기보다는, 가지치기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죄를 몰아간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태종이 강상인 사건을 다시 들고 나온 지 불과 한 달여 만인 12월 25일에 심온을 자결케 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하고 서둘러 종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민씨 형제 사건의 경우 4년이라는 기간을 끌면서 당여를 색출하고 숙청해갔다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 사건의 앞의 두 경우와 달리 태종이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강상인 사건과 심온의 권세가 돌출되어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VI. 맺음말

이제까지 무인정변(1398)이후 형성된 태종(太宗) 집권기의 정치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권력정치의 모습을 『한비자(韓非子)』의 ‘술(術)의 개념을 통해서 설명해 보았다. 즉 그의 통치에서 권력정치가 드러나는 이거이 부자 사건과 민씨 형제 사건, 그리고 심은 사건에서 태종은 한비가 말하는 ‘양권(揚權)을 위한 정치적 ‘술(術)을 사용했던 ‘법가작(法家的) 군주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밝혀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각각의 사건에서 태종이 어떻게 술(術)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 속에서 술치(術治)가 어떤 모습으로 발현되고 완성되고 쇠퇴해 가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그러나 그의 권력정치는 숙청을 위한 숙청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이 시기에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유교적 정치이념과 프로그램의 제도화를 달성하고, 유교 국가 조선의 튼튼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그의 술치는 권력정치에서 출발하여 정권의 취약한 태생적 정당성을 극복하고 유교적 이념과 질서를 회복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나타난 하나의 방편(方便)이었다는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太祖實錄』; 『定宗實錄』; 『太宗實錄』; 『世宗實錄』; 『韓非子』

『국역조선왕조실록』(<http://silok.history.go.kr>)

김성준, 「太宗의 外戚除去에 對하여」, 『歷史學報』 제17·18 합집, 1962, 571~623 쪽

유주희, 「朝鮮 太宗代 政治勢力 研究」, 중앙대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이동희, 「朝鮮 太宗代 承政院의 政治的 役割」, 『歷史學報』 제32 집, 1991, 1~32 쪽

이운구(譯), 『韓非子』, 서울 한길사 2004.

이재봉, 「조선조 초기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교육연구』 1집, 1996, 13~42쪽.

이희관, 「朝鮮初 太宗의 執權과 그 政權의 性格」, 『歷史學報』 120, 1988, 1~39 쪽

임용한, 「조선초기의 수령제 개혁과 그 운영」, 『人文學研究』 제2 호, 1998, 277~315 쪽

유태화(지)/장현근(譯), 『中國政治思想史·先秦編(上)』 서울 동과서 2002.

정두희, 「朝鮮初期 三功臣 研究」, 『歷史學報』 75·76 합집, 1977, 121~176 쪽

정두희, 「朝鮮建國初期 統治體制의 成立過程과 그 歷史的 意味」, 『韓國史研究』 67, 1989, 53~75 쪽

최선혜, 「朝鮮初期 太宗代 藝文館의 設置와 그 歷史的 意義」, 『眞檀學報』 제80 집 1995, 93~113 쪽

최성현, 「朝鮮 太宗의 王權強化政策에 관한 考察」, 全州大 教育大學院 석사논문, 1998.

최승희, 『朝鮮初期 政治史研究』, 서울 지식산업사, 2002.

한충희, 「朝鮮初期 議政府研究 上」, 『韓國史研究』 31, 1980, 81~141 쪽

한충희, 「朝鮮初期 議政府研究 下」, 『韓國史研究』 32, 1981, 85~102 쪽

한충희, 「朝鮮初期 六曹研究」, 『大丘史學』 20·21 합집 1982.

한충희, 「朝鮮初期 承政院研究」, 『韓國史研究』 59, 1987, 27~104 쪽

한충희, 「朝鮮初(太祖2년~太宗1년) 義興三軍府研究」, 『계명사학』 제5 집, 1994, 1~38 쪽

한충희, 「潛邸期 太宗研究」, 『大丘史學』 56, 1998, 61~102 쪽

한충희, 「上王期 太宗研究」, 『大丘史學』 58, 1999, 91~118 쪽

한충희, 「朝鮮 太宗王權의 政治的基盤 研究」, 『대구사학』 제3 집 2001, 43~74 쪽

日原利國, 『春秋公羊傳の研究』, 東京: 創文社, 1976.

국문 요약

본 논문에서는 무인정변(1398) 이후 형성된 태종(太宗)집권기의 정치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권력정치의 모습을 한비자(韓非子)의 ‘술(術)의 개념을 통해서 설명해보고자 한다. 즉 그의 통치에서 권력정치가 드러나는 이거이 부자 사건과 민씨 형제 사건, 그리고 심온 사건에서 태종은 한비가 말하는 ‘양권’(揚權)을 위한 정치적 ‘술(術)을 사용했던 ‘법가적(法家的) 군주’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각각의 사건에서 태종이 어떻게 술(術)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 속에서 술치(術治)가 어떤 모습으로 발현되고 완성되고 쇠퇴해 가는지를 분석한다.

그러나 그의 권력정치는 숙청을 위한 숙청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이 시기에는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유교적 정치이념과 프로그램의 제도화를 달성하고, 유교국가 조선의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그의 술치는 권력정치에서 출발하여 정권의 취약한 태생적 정당성을 극복하고 유교적 이념과 질서를 회복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수단으로 나타난 ‘필요악’이었다는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 투고일 : 2006. 7. 10.

● 심사완료일 : 2006. 8. 29.

● 주제어(keyword) : 태종(Taejong), 권력정치 (power politics), 한비자 (Hanfeizi)
양권(strengthening of power), 술 (Shu).